

K-Cash 가맹점 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3. 07. 26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~ 제22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 락</p> <p>제23조(자격정지·상실 및 해지)</p> <p>① 생 락</p> <p>② 생 락</p> <p>③ 생 락</p> <p>④ 생 락</p> <p>⑤ 신 설</p>	<p>제1조 ~ 제22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>제23조(자격정지·상실 및 해지)</p> <p>① 좌 동</p> <p>② 좌 동</p> <p>③ 좌 동</p> <p>④ 좌 동</p> <p>⑤ 은행은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 전까지 가맹점에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24조 ~ 제25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>제26조(이의제기)</p> <p>① 좌 동</p> <p>② 가맹점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.</p> <p>③ 좌 동</p> <p>제27조 ~ 제28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>제29조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</p> <p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, K-Cash회원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</p>	<p></p> <p>고객에게 불합리한 가맹점자격 정지내용 변경</p> <p></p> <p>고객의 편익을 위해 이의제기 신청 방법 개선함</p> <p></p> <p>고객의 권익을 위해 관련 약관/법령을 구체적으로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30조(관할법원)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·지점 소재지 또는 가맹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</p>	<p>제30조(관할법원)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<u>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	<p>명시함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로 개선함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